

법무부는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- 금일(5. 3.) 경향신문, 오창익의 「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」 제하 칼럼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- 위 칼럼에서는,
 - ‘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’이고, ‘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,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’,
 - ‘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’, ‘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, 데려가라는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’라고 되어 있으나,
 - 이는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사실이 아닙니다.
- 즉,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히 계호하고 있으며, 담배·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.
- 「교도관 직무규칙」(법무부령) 제34조(계호의 원칙)는 ‘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’고 명시하고 있고,
- 「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」(법무부훈령)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,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히 준수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교정본부 보안과	책임자	과 장 양 원 동 (02-2110-3450)
		담당자	서기관 정 희 동 (02-2110-3381)